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2월 1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)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(안 별표 8)
 - (1)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 - (2)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장 내 옥외광고 관련 장부 미비치 및 등록번호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

- (3) 상습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, 벽보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2) 주요내용

○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(안 별표 8)

- (1)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- (2)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장 내 옥외광고 관련 장부 미비치 및 등록번호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
- (3) 상습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, 벽보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